# 2014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
# 『제 3회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』

2014. 9.

한국전력공사 함께일하는재단

# 2014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『제 3회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』

한국전력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뚜렷한 목표의식,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정성과 투철한 실천 의지를 두루 겸비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. 협동조합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.

## Ⅰ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○ 협동조합 설립 취지 및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'**비즈니스 모델**' 성장 지원
○ 사업비, 교육, 컨설팅 등 맞춤 지원을 통한 '**비즈니스 성공 가능성 제고**'
○ 상호호혜와 연대의식에 기반 한 '협동조합 **네트워크 구축**'

### □ 개요

○ 사 업 명: 제 3회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
○ 주　　최: 한국전력공사
○ 주　　관: (재)함께일하는재단
○ 지원대상: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서 정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

※ 기존 8개 개별법[1]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.

1) 농업협동조합법, 수산업협동조합법,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, 산림조합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, 신용협동조합법, 새마을금고법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

# Ⅱ 지원개요

## □ 지원개요

<table>
<tr><td>지원 규모</td><td>• 조합 당 최대 3,000만 원 대출<br>※ 대출범위 예시<br><table><tr><td>시설자금</td><td>생산 설비, 유통·물류시설 구축, 사업장 확보자금 등</td></tr><tr><td>운전자금</td><td>대환대출, 제품생산비 등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금리</td><td>• 무이자<br>• 3개월 이상 상환 연체 시, 2% 이자 납부 의무 적용</td></tr>
<tr><td>상환기간</td><td>• 6개월 거치 24개월 균등상환</td></tr>
<tr><td>기타 지원</td><td>• 사업성과 홍보 및 판로 지원</td></tr>
</table>

※ 대출금 용처는 최종 선정 후,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(단순 경상비 명목은 제한)됩니다.
※ 기타 세부사항은 약정 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※ 조합이 납부한 원금은 본 '지원사업기금'에 귀속되어, 다른 조합의 대출자금 및 경영지원비 등으로 재투자됩니다.

## □ 지원절차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|---|
| 심사 | ○ 서류심사(1차 선정)<br>○ 현장실사(서류심사 통과 조합 대상 사실관계 검증)<br>○ 대면심사(최종 선정) |
| ⬇ | |
| 계약 체결 및 대출금 교부 | ○ 계약 체결<br>○ 대출금 교부 |
| ⬇ | |
| 성과 제고 | ○ 1차 대표자 특강 및 간담회 개최<br>○ 1:1전문컨설팅, 멘토링, 성과관리 모니터링<br>○ 홍보/판로 지원<br>○ 네트워킹 활동 지원 |
| ⬇ | |
| 반기 평가 | ○ 반기보고서 제출<br>○ 보고회 개최 |
| ⬇ | |
| 성과 제고 | ○ 2차 대표자 특강 및 간담회 개최<br>○ 1:1전문컨설팅, 멘토링, 성과관리 모니터링<br>○ 홍보/판로 지원<br>○ 정책포럼 참가 및 네트워킹 활동 지원 |
| ⬇ | |
| 성과 평가 | ○ 성과보고서 제출<br>○ 보고회 개최 |

# Ⅲ 신청개요

## □ 신청자격

○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일반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등기 완료된 법인

※ 선정 후 1년 내,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.

※ 매출 실적 등의 제한 조건 없습니다.

※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.

## □ 신청방법

○ 접수기간: 2014년 9월 1일(월) ~ 9월 30일(화) 18:00

○ 접수방법: 우편(원본 1부) 및 e-mail 접수(wtbox@hamkke.org)

※ 우편과 e-mail 모두 기한 내 보내주셔야 신청 접수로 인정됩니다.

※ e-mail 접수 시 첨부파일은 모두 스캔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→ 메일제목 예시: [제3회 협동조합지원사업] 000협동조합

○ 접 수 처: (121-819)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-4 함께일하는재단 4층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

## □ 제출서류

| | |
|---|---|
| 공통 | 1. 신청서 1부(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)<br>2.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<br>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br>4. 최근 1년간 재무제표<br>※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함<br>(단, 전자회계프로그램 사용할 경우, 전산출력물은 인정)<br>※ 서류심사 통과 조합에 한해 '계정별원장, 매출장, 현금출납장' 추가 제출 요청예정<br>5. 2013년, 2014년(상반기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원본 1부<br>6. 지방세·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<br>7.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1부<br>8.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사업장토지건물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<br>9. 조합원 명부 사본 1부<br>10. 출자금 명부 및 출자금 납입 통장 사본 1부<br>11. 최근 6개월 내 개최된 이사회 또는 총회 자료 1부<br>12. 공장설립등의승인서 사본 1부(해당 조합에 한함)<br>13. 이사장 및 총괄책임자 이력서 각 1부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| | 14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(신청서 서식에 별첨) | |
| 유형별* | 사회적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| |
| | 사회적기업 |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| |
| | 예비사회적기업 |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| |
| | 마을기업 |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| |
| 추가서류 | | 1. 사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적증명서 사본<br>2. 기술특허 등 기술보유에 대한 증명서 사본<br>3. 사업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브로슈어 등 | |
| **증명서류 온라인 발급처** | | 법인등기부등본, 토지건물등기부등본 | www.iros.go.kr |
| | |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국세완납증명서 | www.hometax.go.kr |
| | | 지방세완납증명서 | www.minwon.go.kr |
| | |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| www.4insure.or.kr |

※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조합이라도 지원 취소됩니다.
※ 유형별* 제출서류는 해당 조합에 한해 제출바랍니다.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Ⅳ 심사개요

## □ 심사절차

○ 서류심사 → 1차 선정 → 현장실사 → 대면심사 → 최종 선정

| 구 분 | 일정 및 장소 | 세부사항 |
|---|---|---|
| 서류심사 | 2014년 10월 초<br>(재)함께일하는재단 | ○결과발표: 재단 홈페이지<br>※ 서류심사 통과 조합은 현장실사 전, 계정별원장/ 매출장/ 현금출납장 추가 제출 |
| 현장실사 | 2014년 10월 중순<br>협동조합 사업장 | ○서류심사 통과 조합 대상, 사업장 실사 및 심층 인터뷰 진행<br>※ 현장실사 및 추가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또는 허위 자료임이 확인될 경우, 최종심사 전 탈락 |
| 대면심사 | 2014년 10월 말<br>(재)함께일하는재단 | ○심사방법: PT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<br>○결과발표: 재단 홈페이지 |

※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각 단계 심사 점수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.

## □ 심사기준안

| 평가항목 | 세부평가 항목 | 배점 비율 | |
|---|---|---|---|
| | | 서류심사 | 최종심사 |
|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| 협동조합 운영원리와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설립 목적 및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목적 실현 가능성 | 30 | 30 |
| |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경쟁력 및 지속 성장 가능성 | | |
| 재무 건전성 | 매출, 영업이익, 순익, 자산, 부채, 자본 등의 재무 건전성 | 20 | 10 |
| 기업가 정신 | 경영 및 조직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 능력 | 10 | 20 |
| | 문제 해결 의지 및 해결 가능한 방법 제시 가능성 | | |
| | 창의성, 혁신성, 책임성, 윤리성, 목표의식, 추진력, 소통력 | | |
| 사회적 가치 | 주목하는 사회 문제 및 해결 가능성 | 20 | 10 |
| | 지역 및 사회 공헌도 | | |
| |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가능성 | | |
| 조직 역량 | 조직원의 사업 추진 역량 | 20 | 30 |
| | 활용 가능한 보유 자원 및 인프라 구축 현황 | | |

# V 문 의 처

## □ (재)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박애경 · 조리지 매니저

( Tel. 02-330-0778/ 0766 )

## □ 사업 설명회

○ 일시: 2014년 9월 17일(수) 오후 2시

○ 장소: (재)함께일하는재단 WT교육장

**※ 설명회 사전 접수 없음**

※ 재단 홈페이지 '오시는 길(동교동)' 참조
(http://www.hamkke.org/foundation/directions.asp)

－전화로 문의하시기 전에,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－

# 『제 3회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』 자주묻는질문(FAQ)

**Q1. 이번 공모 대상은 누구인가요?**

A: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'일반협동조합' 및 '사회적협동조합'이 대상(*매출 제한 없음)이며,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**Q2.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매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?**

A: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(수입)을 의미합니다. 조합원 회비나 정부지원금, 후원금 등은 제외입니다.

**Q3. 선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?**

A: 최대 10개 조합 선정 예정이며, 조합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예정입니다.
※ 대출규모 및 선정 조합수는 최대치를 안내한 것이며, 최종심사 후 선정 조합수 및 대출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.

**Q4.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, [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지방세·국세 완납증명서] 등의 서류 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의 고용 관련 서류 제출은 불가능하지 않나요?**

A1 (재무자료 관련) :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실적이 미미하여 재무제표 작성이 무의미할 경우, 설립 후 매출이 발생한 만큼의 가결산서나 매출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단, 설립 이후 매출 발생이 '0'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A2 (고용자료 관련) : 사회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가 있다면 '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'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단, 채용 인력이 없거나, 있더라도 사회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**Q5. 지난 1~2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, 개인사업자, 영리법인 등으로 사업 운영 후 최근 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했을 경우, 전신 매출실적은 유효한가요?**

A: 협동조합 법인 (전환)설립 이전 단체(법인 등)의 매출실적은 유효하며, 전신의 재무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※ 단, 협동조합 법인 설립 전후 동일한 조직 형태 및 사업 내용일 경우에 한합니다.

**Q6. 협동조합 설립 시, 현물출자로 출자금(자본금)을 조성한 경우 제출자료(10번)는 어떻게 구비되어야 하나요?**

A: 현물출자 명부 및 내역서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밖에 현물출자자가 재산을 인도한 후 권리이전 관련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.

**Q7. 선정 후 1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, 기간 내 지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?**

A: 약정서에 명시되는 사항으로서,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. 기간 내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단 사무국이 지속적으로 현황 파악 및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

**Q8. 지원내용 중 1:1 전문컨설팅 과정이 있는데, 기존에 조합에서 컨설팅 받고 있는 업체(혹은 개인)를 지정(추천)해도 되나요?**

A: 경영 및 조직운영 관련 1:1 컨설팅은 각 협동조합의 수요조사를 통해 분야를 선택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진행합니다. 조합의 지정(추전)이 있는 경우에는, 재단 사무국이 해당 컨설팅 업체(혹은 개인)의 전문분야나 실적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 진행하게 됩니다.

**Q9. 신청서 서식의 조합현황 작성부분을 보면, 설립 초기 협동조합은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이 부분,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**

A: 조합의 현황 및 계획을 최대한 작성하시되,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.

**Q10. 신청서의 예산계획 부분에 자부담 작성 란이 있는데, 자부담이 반드시 투입되**

**어야 하나요?**

A: 사업예산 수립 시 자부담 비율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대출금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통해 사업의 전체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일 뿐, 자부담 투입을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.

**Q11. 이번 협동조합의 신청사업 예산이 타 기관의 지원금이나 민간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일부 충당될 경우, 이러한 외부 조달 자금은 자부담에 해당하나요?**

A: 자부담 예산으로 작성해주시되, 외부 조달 기금처를 비고란에 별도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Q12. 현장실사는 신청한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나요?**

A: 서류심사 통과 협동조합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. 해당 조합은 재단 홈페이지 게시 후 별도 연락 예정입니다.

**Q13.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우편과 메일 모두 보내야 하나요?**

A: 예, 기한 내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. 메일 발송 시 첨부자료는 모두 스캔해서 보내주시기 바라며,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- 감 사 합 니 다 -